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6 2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7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위원회 (2007.06.28)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이 영 희

가. 제안이유

2007. 12월 “마포구립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개정 골자

-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조)
- (2) 도서관의 설치목적, 기능,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 (3)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 (4)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5) 도서관 시설사용 및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내지 제13조)

(6) 도서관 자료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 내지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물은 사업비 28억4,800만원(국비 4억3,600만원, 시비 12억4,600만원, 구비1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서강동 복합청사내 지상3층 일부와 지상4,5층에 열람석 200석 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 마포구립도서관이 2007년 12월경에 건립됨에 따라 동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를 통한 지식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동 조례안에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도서관의 조직과 인력을 규정한 안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구청장에 대한 용어 정의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을 규정한 안 제6조제2항에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직을 대신할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금액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안년월일 : 2007. 6. 28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위원중 위원장 유고시 대신할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의 징수금액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구청장에 대한 용어를 수정함.(안 제5조제2항)

나.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직을 대신할 부위원장을 추가 구성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2항,3항)

다. 사용료의 징수금액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본 조례로 정함.(안 제11조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중 “구청장이” 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로 하고, “관장은 도서관의” 를 “도서관의” 로 하며, “경우에는” 을 “경우에” 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중 “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을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로 하고,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로 한다.

안 제6조제3항중 “소관업무 공무원과” 를 “문화체육과장과” 로 하고, “전문인사” 를 “ 및 관계 전문인사” 로 하며, “한다” 를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을 “구청장” 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중 “규칙으로” 를 “별표와 같이” 로 하고, 사용료의 징수금액 등을 별지로 첨부한다.

[별표]

사용료 등(제11조제2항 관련)

1. 시설사용료

| 구 분 | 기 준 | 금 액 |
|------|-----------|---------|
| 세미나실 | 1회 3시간 기준 | 30,000원 |

○ 기본 사용시간(3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의 10%를 가산적용

○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를 받는다

2. 자료복사 및 인쇄

| 구 분 | 규 격 | 금액(1면당) | 비 고 |
|----------------|-----|---------|-----|
| 복 사 (전자복사기) | B5 | 20원 | |
| | A4 | 30원 | |
| | B4 | 40원 | |
| | A3 | 50원 | |
| 인 쇄 (프린터기) | A4 | 30원 | |
| | B4 | 40원 | |
| | A3 | 50원 | |

3. 회원증 발급

| 구 분 | 금 액 | 기 준 | 비 고 |
|-----|--------|-------|---------|
| 회원증 | 1,000원 | 1회 1매 | 신규, 재발급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5조(조직 및 인력) ①(생략)</p> <p>②관장은 <u>구청장이</u> 임명하되,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p> | <p>제5조(조직 및 인력) ①(원안과 같음)</p> <p>②—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서관의 ——, ——, ——경우에 ——.</p> |
| <p>제6조(운영위원회) ①(생략)</p> <p>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은 <u>소관업무 공무원과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u>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 <p>제6조(운영위원회) ①(원안과 같음)</p> <p>②——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p> <p>③위원은 <u>문화체육과장과 —— 및 관계 전문인사</u>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
| <p>④(생략)</p> | <p>④(원안과 같음)</p> |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8조(운영 및 관리) ①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u>(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p> <p>② - ③(생략)</p> | <p>제8조(운영 및 관리) ①_____구청장_____.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② - ③(원안과 같음)</p> |
| <p>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생략)</p> <p>②사용료 등의 징수는 「도서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u>규칙으로</u> 정한다.</p> | <p>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원안과 같음))</p> <p>②_____</p> <p>_____</p> <p>_____, _____ <u>별표와 같이</u> _____.</p>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5조(조직 및 인력) ①(생략)</p> <p>②관장은 <u>구청장이 임명하되,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u></p> | <p>제5조(조직 및 인력) ①(원안과 같음)</p> <p>②---<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이-----, 도서관의 -----, -----, -----경우에 -----.</u></p> |
| <p>제6조(운영위원회) ①(생략)</p> <p>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u>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위원은 <u>소관업무 공무원과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u> 중에서 <u>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u></p> <p>④(생략)</p> | <p>제6조(운영위원회) ①(원안과 같음)</p> <p>②-----<u>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u> <u>---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u></p> <p>③위원은 <u>문화체육과장과 ----- 및 관계 전문인사</u> <u>-----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u> <u>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④(원안과 같음)</p> |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8조(운영 및 관리) ①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u>서울특별시</u>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p> <p>② - ③(생략)</p> | <p>제8조(운영 및 관리) ①----- <u>구청장</u>-----, ----- ----- ----- ----- ----- -----</p> <p>② - ③(원안과 같음)</p> |
| <p>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생략)</p> <p>②사용료 등의 징수는 「도서관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u>규칙으로</u> 정한다.</p> | <p>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원안과 같음)</p> <p>②----- ----- -----, ----- <u>별표와 같이</u> -----.</p> |

[별표]

사용료 등(제11조제2항 관련)

1. 시설사용료

| 구 분 | 기 준 | 금 액 |
|------|-----------|---------|
| 세미나실 | 1회 3시간 기준 | 30,000원 |

- 기본 사용시간(3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의 10%를 가산적용
-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를 받는다

2. 자료복사 및 인쇄

| 구 분 | 규 격 | 금액(1면당) | 비 고 |
|----------------|-----|---------|-----|
| 복 사 (전자복사기) | B5 | 20원 | |
| | A4 | 30원 | |
| | B4 | 40원 | |
| | A3 | 50원 | |
| 인 쇄 (프린터기) | A4 | 30원 | |
| | B4 | 40원 | |
| | A3 | 50원 | |

3. 회원증 발급

| 구 분 | 금 액 | 기 준 | 비 고 |
|-----|--------|-------|---------|
| 회원증 | 1,000원 | 1회 1매 | 신규, 재발급 |